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80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정운천·권명호

강기윤 · 엄태영 · 김영식

이종성 · 김성원 · 박성민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하여야 함.

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, 제3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3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"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"광역시·도"를 "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	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의 수립 등) ①·② (생 략)	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	<u>수</u>)
③ 특별시장· <u>광역시장·도지</u>	③ <u>광</u> 역시장·특별자
<u>사</u> 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	<u> 치시장 • 도지사</u>
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	
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	
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	
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	
행하여야 한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시·도별 감염병 위기관	제35조(시·도별 감염병 위기관
리대책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리대책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	②
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	
따라 특별시· <u>광역시·도</u> ·특	<u>광역시·특별자치</u>
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	<u>시·도</u>
다)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	
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
	-,